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안자 : 이동현 의원 외 11명

나. 의안번호 : 제691호

다. 제출일자 : 2019. 5. 24.

라. 회부일자 : 2019. 5. 30.

2. 제안사유

- 교통약자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의 대중교통 이용시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현재 '교통약자법'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도 이용 가능한 수직손잡이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설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교통수단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교통약자의 사건사고 경감을 위한 안내방송, 스티커 부착,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시 사건사고를 줄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안전을 위해 자리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도록 하는 등의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안 제18조제2항)

나.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용안전을 위한 안내방송과 스티커 부착 등을 할 수 있다(안 제18조제3항)

다.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안 제25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9. 6. 4 ~ 2019. 6. 12

○ 제출의견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원안동의¹⁾

- 신설 제18조제2항의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안전을 위한 안내방송에 대한 규정과 및 제18조제3항의 안내방송과 관련된 안내문, 스티커 등에 대한 제작 및 부착은 현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이용편의 및 안전을 위해 안내방송 및 스티커 부착 등을 시행중에 있으므로, 교통약자의 이용안전을 위한 안내방송 및 스티커 부착 관련 개정조례안에 별도 의견 없음

1) 보 행정책과-7860

- 신설 제25제2항의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신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5조 및 제11조에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서비스 개선 노력 및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교통사업자 의무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조례 제3조에 시장의 책무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 및 재정보호 노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안전을 위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할 경우 초과 설치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개정조례안에 별도 의견 없음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교통사업자가 안내방송을 하고,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차량 내부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통사업자가 이동편의시설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 서울시장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 방송 및 스티커 부착 등” 관련(안 제18조 관련)

-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사업자²⁾가 교통약자 안전을 위한 안내방송을 하도록 하고, 안내방송에 대한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현재 서울시내 버스 및 지하철 등의 교통사업자들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안내방송 실시 및 이와 관련한 스티커 부착 등을 시행하고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³⁾ 등에서는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5호.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사업자의 서비스 개선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사업자의 서비스 개선 노력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통사업자의 의무를 반영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동편의시설 설치 비용지원” 관련(안 제25조제2항 관련)

-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법 제10조4)의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시장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법 제5조 등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교통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 조례 제3조5)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시행을 위한 재정확보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정책 시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③ (생략)

5) 제3조(시장의 책무) ②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의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